

자 체 수 입 금 운 영 규 정

부천도시공사 자체수입금운영규정

제정 2019.02.28. 규정 제6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도시공사의 자체수입금의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수입금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자체수입금”이란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수행 등으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다만,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조례 제2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직접 경비(대행수수료)는 제외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라 시가 현금 출자한 자본금
2. 조례 제19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자체 개발 사업(출자사업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한 수입금
3. 조례 제19조제7호, 제8호, 제9호 및 부천도시공사 수탁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시 등의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함에 따른 대행수수료
4. 조례 제19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자체 경영수익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조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사채발행 수입금 또는 차입금 등
6. 조례 제4조에 따라 시가 현물 출자한 자산, 제2호의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자산 등 공사 소유 자산의 처분 및 임대 수익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자체수입금의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체수입금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협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탁수수료 등의 산정 및 징수) ① 위탁수수료는 부천도시공사 수탁사업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② 부천도시공사 수탁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수탁협약의 체결에 명시하여 징수한다.

제5조(자체수입금의 관리) ① 자체수입금은 대행사업비와 구분하여 독립계정으로 관리한다.

② 자체수입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체수입금 관리책임자를 두며, 자체수입금 관리책임자는 회계규정 제8조에 따라 분임징수관(소관 부서장) 및 분임수입금출납원(소관부서 또는 팀의 4급 또는 5급 직원)으로 한다.

제6조(자체수입금의 사용) 자체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1.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사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의 직접경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경상경비
2.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보전
3.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적립
4. 출자자에 대한 배당 및 자본금의 감자(반납)
5. 조례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설치 및 운영
6. 법인세 및 제세공과금 등
7. 그 밖의 공사 목적사업에 부대되는 경비 및 생산성 촉진을 위한 시책지원비(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제7조(결산보고) 부천도시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자체수입금의 발생 명세 및 지출결산을 매년도 연차결산서에 포함하여 이사회 및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잉여금처리) 사장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 자체수입금에 관한 잉

여금(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현황 관리) 자체수입금 관리책임자는 자체수입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사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9.02.28. 규정 제6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